

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장애
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3 월 15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1843호

붙임 여수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1부

여수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범위)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 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, <u>장애등급</u> , 업무난이도 등 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5조(지원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장애정도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